

-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99
------------	------

2017년 4월 2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동)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친환경 LED조명 교체
- 테마역사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3)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8년 서울시 지하철 분야에 대한 출자 예산 편성 전에 출자 동의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운영 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내진보강, 노후전동차 교체, 승강편의시설 설치, 승강장안전문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음
- 서울시가 검토 중인 '18년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17년 대비 55.1%(2,585억 84백만원) 증가한 7,282억 40백만원으로 '18년 출자금액이 급증한 주된 사유는 '18년 도시철도공채 부채 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17년에 비해 2,776억 29백만원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

- 참고로 '18년 서울시 출차계획을 살펴보면 '17년 대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39.2%(474억 68백만원) 감소한 736억 65백만원,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등 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70.7%(175억 94백만원) 증가한 424억 84백만원, '공사전출금' 등 전액 시비 사업은 89.1%(2,884억 58백만원) 증가한 6,120억 91백만원을 출차하는 것임¹⁾

※ 참고 :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차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편성검토안)	증 감	비 고
합 계	469,655,250	728,239,562	258,584,31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6,500,000	52,500,000	6,000,000	국비:시비:운영기관 =40%:30%:30%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6,500,000	9,990,000	△6,510,000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	24,540,000	-	△24,540,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7,015,000	11,175,000	△15,840,000	국비:시비:운영기관 =30%:35%:35%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6,578,000	-	△6,578,000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3,585,000	11,680,000	8,095,000	시비:운영기관 =50%:50%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291,000	291,000	-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1,853,000	4,827,000	2,974,000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5,360,250	2,985,600	△2,374,65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12,500,000	21,400,000	8,900,000	시비:운영기관 =13%:87%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000	1,300,000	-	시비 역량 1억원씩 출차
공사전출금	319,433,000	597,061,962	277,628,962	시비 100% 출차
선도 테마역사 조성	2,500,000	2,000,000	△500,000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600,000	3,100,000	1,500,000	
지하철 소음측정 사업	100,000	-	△100,000	
지하철역 노후 승강편의시설 개선	-	9,929,000	9,929,000	

1)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출차·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차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서울지하철의 경우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에도²⁾ 못 미치는 운임 수준과³⁾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로⁴⁾ 운영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 내진보강, 노후전동차 교체 등의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출자를 통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업체 시험성적서 허위 제출, 김포공항역 등 9개 역사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사업 지연,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관련 감사원 문책요구 등 서울교통공사 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출자 이후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2017년 5월말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 일인당 수송원가 1,344원

※수송원가 =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3) 평균운임 944원

※평균운임 = 운수수입/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교통카드 이용 기준 기본운임 1,250원(10km이내), 10이상~50km미만 구간은 매5km마다 100원 추가, 50km이상 구간은 매8km마다 100원 추가

4) 2016년 서울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액은 3,457억원이며, 이는 2016년 당기 손손실 3,850억원의 89.8%를 차지하는 규모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99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
- 지하철 관세센터 통합구축
-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친환경 LED조명 교체
- 테마역사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소순선 (☎2133-2248)